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

2025. 2.



[사업 신청 및 문의처]

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K-스타트업 누리집 → '사업 신청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사업 신청을 위해 K-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신청 방법 : ① K-스타트업 접속 검색창에 'k-startup.go.kr' 또는 '창업지원포털' 검색

② 사업 신청 확인 K-스타트업 로그인 사업공고(모집중) 공고선택 '접수 바로가기' 클릭

③ 사업 신청 확인 K-스타트업 로그인 사업 신청관리 사업 신청 사업 신청내역조회

2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접수는 <u>16:00 정각</u>에 종료되지만, <u>16:00</u> 전에 <u>1단계(약관동의)</u>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u>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u>에 한하여 <u>18:00까지</u>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 (유의사항)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3 업무 담당자 ID로 사업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본인 ID**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사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 <u>신청해야 합니다.</u>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모집 공고문상의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우선선정 대상자도 사업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답변

☑ <u>신청해야 합니다.</u> 우선선정대상일지라도 반드시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모집 공고문상의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6 사업 신청 시 과제명은 무엇을 쓰나요?

답변

- ☞ 사업 아이템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과제명은 창업 아이템(제품)이 한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기술이 적용된 ○○기능의(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서비스

7 사업 신청 시, 아이템이 기술 간 융복합으로 인해 단일 기술 분야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전문기술분야]에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창업아이템(사업)과 가장 근접한 기술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소속 직원이 없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인력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 소속 직원이 없으신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 저장 → 제출 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9 사업 신청시 작성하는 세부정보(학력, 경력 등)가 평가에 반영되나요?

답변

☞ <u>아닙니다.</u> 사업 신청시 기재하는 세부정보는 창업기업 신청 현황을 위한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선정평가에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

10 사업 신청 시 작성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선정평가에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

11 개명한 이름으로 실명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 록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변

- 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실명인증을 연계하는 SCI평가정보(02-512-1300)에 유선 연락하여 시스템에 개명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정정 요청하여 정정이 완료된 이후에 실명인증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실명인증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주관기관은 1개만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 <u>그렇습니다.</u> 신청자 본인이 사업을 수행할 <u>주관기관 1개</u>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13 사업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답변

▽ <u>가능합니다.</u>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주관 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선택 시 모집공고와 함께 게시된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사업 신청 기간 중 주관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 □ 그렇습니다. 주관기관 변경은 접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단,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 ※ (유의사항)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의 신청 주관기관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K-Startup 누리집 접수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변경경로 :
 K-Startup

 사업신청관리
 나역조회

 [과제책임자]

 과제명 클릭

15 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답변

☞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 또는 K-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시스템 문의 : 유선전화 1357번 3번(K-Startup 창업사업) 3번(창업사업 문의) 0번(종합 상담-시스템) 가카오톡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검색

16 K-스타트업에서 상담하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K-스타트업 접속 후,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면,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14일 이내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
 * 경로 :
 K-Startup
 고객센터
 상담하기
 상담신청
 등록

17 사업 지원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해당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답변

☞ 공고문 16~17p에 주관기관별 문의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고자 하는 주관기관에서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선 또는 K-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사업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 K-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창업사업 매뉴얼) 탭에서「(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확인이 가능합니다.
- * 사업신청 전,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 및 '[별첨 5] 2025년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K-Startup

 고객센터
 온라인 매뉴얼

 창업사업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19 본 사업의 절차, 운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 K-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알림마당에 있는 공지사항 탭에서 「창업 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 지침에 명시된 창업기업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K-Startup 고객센터 자료실 '통합관리지침' 등합관리지침' 통합관리지침(제13차)'

20 기업인증이 무엇인가요? 신청접수 마감일에 바로 할 수 있나요?

- ☞ 기업인증은 기업의 개인사업자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업은 ^①공동/금융인증서 인증, ^②SCI기업 실명인증, ^③국세청사업자확인, ^④금융인증서인증 중 1개의 방법을 택하여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SCI 기업실명인증의 경우,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SCI 기업 실명인증 방법 >

답변

- ① **사이렌24** (www.siren24.com) 접속 후, 회원가입
- * (기업 실명등록 안내) 고객지원센터(상단 우측) 실명등록센터(좌측) '기업 실명 등록 안내' 페이지 참조
- ②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각 1부 준비
- *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고객지원센터 실명등록센터 기업 실명등록 안내 페이지의 '기업정보업데이트 요청서' 배너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가능
- ③ (FAX) 02-6209-3029 또는 (E-MAIL) find@kodata.co.kr 발송
- * (등록센터 운영시간) 09:00~18:00(월~금), 토·일·공휴일 휴무
- ** (등록센터 문의번호) 🏗 02-3279 -6500 (서울신용평가정보 고객센터)

21 기업인증 시, 신청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기업인증은 개인의 인증서가 아닌 기업용 공동인증서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증'을 공동인증서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전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2 기업인증 시, 금융인증서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답변

☞ 금융인증서 인증이 실패할 경우, 먼저 K-Startup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에도 인증이 실패할 경우,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인데 기업명만 변경된 경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단변

☞ K-스타트업 접속 후, 사업신청관리 화면 내 우측상단에 My 버튼 → 기업(기관) 정보관리에서 기업(기관)명 변경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기업의 기관명, 사업자번호, 설립일자, 대표자가 모두 일치하여야 기업명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업(기관)명 인증에 성공할 경우 기업(기관)명 및 설립 일자가 변경되며, 국세청 사업자 인증일시가 갱신됩니다.

 * 경로 :
 K-스타트업 사업신청 전속
 MY – 기업(기관) 나의 기업명 변경
 기업(기관)명 변경

24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잘못 등록하여 수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사업자번호 및 법인번호는 비활성화 항목으로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결하여 수정할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임금 체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내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 고용노동부 누리집 | ─ 정보공개 |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 체불사업주명단조회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채무의 경우,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마감일('25.3.11.)까지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참고 사항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 ·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 ·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공동대표(A 대표, B 대표) 중 A 대표자가 국세 체납 중입니다. B 대표자로 사업 신청 시 요건검토를 통과할 수 있나요?

답변

3

☞ **불가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검토' 단계에서 공동(각자)대표, 전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규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u>불가합니다.</u>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과 창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답변

☞ <u>나이 제한은 없습니다.</u> 다만 K-Startup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이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자격 내용에 적합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국외 창업기업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 가능합니다. 단, 국외 창업기업의 업력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기업으로 국외 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3년 이내 법인(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을 보유하거나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내 사업자를 활용하여 K-스타트업에서 사업신청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 ②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 고용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 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둠

참고 사항

* 국외 창업 요건 :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7 외국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변

☞ **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거소증 등)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시 실명 인증이 가능합니다.

현재 R&D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 신청 및 협약이 가능합니다.

과거 해당 사업에 신청하였고.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극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과거의 사업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이 사업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입니다. 10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문의 신청 제외 대상에서 명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11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K-startup 접속

중간 좌측 검색 * 확인 경로 : 홈페이지 사업공고 모집 중 네모박스에 '통합공고' 입력 후 검색적용

모집 중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등록일자 24.12.31.)

12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00대학교의 겸직 인력입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13 창업지원사업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동시수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 먼저 선정된 사업의 최종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 확약서(최종선정시 개별안내 예정)'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은 선정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등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기업 신청 자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 창업 여부는 모집공고와 함께 게시된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단, 자가진단의 결과는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추후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참고 사항

신청서 심사 확인서 *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① 확인서 발급 신청 (10일 이내) 접수 발급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기본정보 자가진단 해당여부 ② 창업기업 자가진단 (접속) 입력 수행 확인

15 공고문 내 창업 여부 기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신청기업 구분'은 초기창업패키지에 신청하는 기업의 형태를 의미하며, '상세구분'은 초기창업패키지에 신청하는 기업 외 기존에 창업하여 유지 또는 폐업한 기업 등에 대한 해석입니다.

답변

- ☞ '신청기업 구분' 및 '상세 구분'을 기준으로 '창업여부' 확인이 가능하시며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 공고문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16 창업 여부 확인 서류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와 제출 방법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7 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 창업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내용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공통 제출(창업 이력 확인용) 사업자등록증(명) 공통 제출(신청기업 정보 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 경우 기 주주명부 또는 출자자명부 법인인 경우(지분 현황 확인용) 업 신청기업 주주명부상 법인 주주가 있는 '법인 주주'의 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우(법인인 주주의 임원 확인용) 보 상속 증여세 납부내역증명, 증여계약서 등 상속, 증여 관련 해당 사항 있을 경우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부도, 파산 관련 해당 사항 있을 경우 파산선고결정문, 파산면책선고문 등 사업자등록증명 신청기업 외 유지 중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신청기업 외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휴업사실증명원 신청기업 외 휴업 이력이 있는 경우 01 력 신청기업 외 공동사업자 탈퇴 이력 보유 사실증명 정 (공동사업자내역) (개인사업자 해당) 보 사실증명 신청기업 외 법인대표자 퇴임 이력 보유 (대표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 해당)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이력 보유

참고 사항

- * 발급처 :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정부24, 대법원 등기소, 은행, 법원 등
- * 창업기업 여부 확인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18 창업여부 기준표에서 이종업종과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주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 분류(5자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세분류→일치 시 동종업종', '세세분류→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 주업종코드는 '국세청 MY 홈텍스'에서 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연계표 : 국세청 → 공지사항 → 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1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 문서(HWP)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 <u>아닙니다.</u> 워드(Microsoft Word)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전년도 사업계획서, 타 사업 사업계획서, PPT 양식의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 불가하며,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

☞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은 15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30MB)이 제한됨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 이내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하시면 PDF 형식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답변

☞ 사진, 표, 그래프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30MB)이 제한되어 있으니 고화질의 사진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품(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서비스)이 개발 중이어도 사업계획서 3페이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5

☞ 제품(서비스)을 개발 중인 경우, 설계도나 완성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 타 창업지원사업 수행 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6

☞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본인 또는 타인의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다면, '자격요건 검토'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서 중복률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7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사업계획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모집 공고문과 함께 안내 드린 사업계획서의 목차, 세부 항목을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가점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 가점 대상자일 경우,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모집 마감일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가점 세부 항목은 본 모집공고 상의 '평가 및 선정'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 급여와 임금근로 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 하여 '사업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 전 집행한 인건비를 협약체결 이후 소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사업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답변

□ 고렇지 않습니다. 비목 간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4 사무실의 서랍, 책상 등을 정부지원사업비로 구매 가능한가요?

답변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시제품을 개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는 비용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5 정부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 <u>가능합니다.</u> 협약체결 이후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존, 신규고용 인력 모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 가능하고 사업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6 사업 수행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 회사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약 종료 후에는 잔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7 대표자의 친인척 인건비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인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8 제품 광고비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 <u>가능합니다.</u> 협약 기간 내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9 총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답변

▶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되며, 창업 기업은 일정부분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10 자기부담사업비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부담사업비는 총 사업비에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금 10% 이상(10~30%) + 현물 20% 이하(0~20%)의 합계 금액으로 총액 기준 30% 이상 금액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물은 인건비(창업기업 본인 및 기존 임직원),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100%)	7,000만원 (70%)	1,000만원 (10%)	2,000만원 (20%)

지기부담사업비 현금 부담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 ☞ **불가합니다.** 창업기업의 부채 및 이자 상환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 * (참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3조(사업비 집행)

[평가·선정]

1 평가는 누가 하나요?

- ☞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중 위촉된 다수의 평가위원이 선정평가 가이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 <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
 - 1. 산업계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2.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 3. 연구계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
 - 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위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평가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답변

☞ 평가는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개발 계획,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고문의 '평가 및 선정 절차'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단변

☞ 서류평가, 심층인터뷰, 발표평가 결과는 단계별 평가 종료 후 통과자를 대상 으로 신청하신 주관기관에서 개별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를 드립니다.

 참고
 신청 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선정 규모의 2배수 선발
 ● 대표자(신청자) 인터뷰
 ③ 발표평가 대표자(신청자) 발표
 ④ 최종 선정 최종 선정 확정

4 서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가점 포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답변

- ☞ 서류면제 또는 우선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 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 위배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심층인터뷰·발표 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 심층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류평가 통과기업의 대표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우수성, 성과 창출 가능성 등 대표자의 역량 검증을 위해 30분 이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답변

- ☞ 심층인터뷰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 대표자(신청자) 참석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인터뷰가 가능합니다.
- * 서류면제 및 우선선정 대상자도 심층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6 발표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류평가 통과 기업의 대표자(신청자)는 30분 이내(발표15~20분이내 + 질의응답) 발표평가를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성, 개발 계획의 적정성,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 ☞ 우선선정 대상 일지라도,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 대표자(신청자) 발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 * 우선선정 대상자도 발표평가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서류평가 결과 발표 후, 심충인터뷰·발표평가 준비 기간은 얼마나 부여되나요?

답변

- ☞ 서류평가 결과 발표 후, 심층인터뷰 및 발표평가 준비 기간을 각각 7일 내외 범위에서 부여할 예정입니다.
- * 단, 평가일정 및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류평가 결과가 심충인터뷰 또는 발표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 서류평가 점수는 심층인터뷰와 발표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 하며, 발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

9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대표자가 부재중인 경우, 발표평가에 타 직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리평가 방지를 위해 평가 전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얼굴 대조 등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정부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및 창업기업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사업비를 초과하여 최종 사업비가 배정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특허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 등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답변

☞ 평가를 시작하기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의무로 작성하며, 주관 기관별 평가위원 사전교육, 평가장 내 사진 촬영, 사적 통화 금지 등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보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13

최종선정 통보 후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 ☞ '협약체결 확약서'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써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은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요청일 (발송일 기준)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최종선정자 대상 메일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 이때,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 제출한 협약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